의 안 번 호	1532	【울산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9. 3. 14.(목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3. 14.(목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3. 26.(화)

2. 제안이유

가. 이 조례는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

나. 구민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,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~안 제3조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

나. 안 제4조~안 제6조 저감 계획의 수립, 대기측정망 설치·운영, 정보제공

다. 안 제7조~안 제10조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의 지원, 교육·홍보, 구민제안 및 포상, 관계부서의 협조

라. 안 제11조 시행규칙 및 부칙

4. 근거법규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제3조제1항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5. 검토의견

○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제1항에 근거

하여,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음.

○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근 거 법 규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(약칭: 미세먼지법)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,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 물질(이하 "미세먼지등"이라 한다)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대국민 교육·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.